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38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4월 12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공고기간: 2024. 04. 12. ~ 2024. 04. 25.
-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강옥이	1958.○.12.	0178200274100004765	₩3,000,000	경상북도 경주시 동문로 ○○
2	김정수	1963.○.10.	0178200274100001055	₩12,600,000	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2길 ○○
3	김정수	1963.○.10.	0178200274100004842	₩5,310,000	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2길 ○○
4	조준범	1971.○.23.	0178200274100004781	₩8,850,000	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11길 ○○
5	조현섭	1982.○.03.	0178200274100004869	₩9,558,000	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길 ○○
6	김병완	1952.○.13.	0178200274100003717	₩10,620,000	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75길 ○○
7	김택훈	1961.○.15.	0178200274100003685	₩11,151,000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○○
8	백상균	1952.○.10.	0178200274100004843	₩12,390,000	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2길 ○○
9	장해원	1981.○.31.	0178200274100004872	₩12,744,000	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 4길 ○○
10	김준우	1977.○.10.	0178200274100003746	₩12,744,000	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08길 ○○
11	이정자	1938.○.19.	0178200274100004839	₩53,100,000	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○○

12	유한회사 은경결혼정보	134614-0000397	0178200274100004065	₩29,736,000	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뒤길 7, 104호
13	유한회사 용정인터정보	161514-0001443	0178230274100004204	₩42,355,380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10길 43-10
14	김민철	1992.○.20.	0178230274100000059	₩5,810,000	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34길 ○○
15	(주)화영플라워	170111-0591330	0178200274100010774	₩1,438,000	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 벌대로647길 20-3, 2층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7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